

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6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	2003. 11.
제출자	거창군수

□ 제정이유

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,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상담실의 설치기준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둠(안 제3조, 제4조)
- 상담요원 구성 및 상담실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둠(안 제5조, 제6조)
-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자격기준, 신규임용 연령제한, 신분보장과 정년, 복무,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둠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
□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제15조)
- 청소년기본법(제61조) 및 같은법시행령(제63조)
- 2003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(문화관광부, 경상남도)

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에 세계화,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상담실의 명칭은 거창군청소년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사무실은 거창군 관내에 둔다.

제3조(설치기준)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, 전화상담실, 면접상담실, 집단상담실, 상담대기실,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을 100㎡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
2.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
3. 청소년관련 상담
4.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
5.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
6.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사업
7.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
8.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
9.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상담 관련 업무
10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

제5조(상담요원 등의 구성) ①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, 상담원(전임상담원 포함)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약간명의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, 상담요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.

제6조(상담실장의 직무) ① 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.

②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자격과 임용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.
2. 신규임용의 연령은 상담원 만35세이하, 상담보조원 만30세이하로 한다.
3. 상담요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① 상담실 직원은 제11조 및 제17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퇴직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.

③ 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상담실장(단,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함) 만60세, 상담원(선임상담원 포함) **만57세**, 상담보조원 **만55세**로 한다.

제9조(상담원등의 복무) ① 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:00~21:00로, 동계는 17:00~20:00로 한다.
2.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.

②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- 제10조(보수)** ①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② 상담원등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당연퇴직 또는 면직)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2.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.
3.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
4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

제12조(운영방법 및 예산) ① 상담실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- ②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한다.
- ③ 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- ④ 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.

제13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청소년관련 전문가, 대학교수, 상담 업무에 경험이 있는자, 청소년관련 종사자,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)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
 2.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, 문제점 협의
 3. 상담실 운영계획,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
- ② 협의회는 년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운영은 상·하반기로 구분하고 그 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.
 2.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6조(상담방법)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내방, 전화, 사이버, 서신, 출장상담
2. 직접대응상담, 집단상담, 전화녹음상담

제17조(징계)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거창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18조(경력산정)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.

제19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운영의 제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.

<별표1>

상담원등 임용자격기준

구 분	자 격 기 준
상담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원의 상담분야 【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】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·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상 담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【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】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·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상담보조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년제 이상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

* 상담관련분야는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임

<별표2>

경력산정기준표

직종별	구분	경 력	환산 비율
상담원	“갑” 경력	○ 대학전임강사 이상경력 ○ 박사과정 이수연한(3년한) ○ 석사과정 이수연한(2년한) ○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 이상 근무경력(석사이상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) ○ 군경력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 ○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, 단, 공공상담기관은 국 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	100%
	“을” 경력	○ 대학 시간강사(주당 8시간 이상) ○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○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경력	80%
	“병” 경력	○ 국가, 지방자체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○ 청소년상담실 행정원 근무경력 ○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	50%
상담보조원	“갑” 경력	○ 상담관련업무의 실무 경력 ○ 석사과정 이수연한(2년한) ○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(전문대학과정 2년한, 학사과정 4년한) ○ 군경력(의무복무기관)	100%

- ※1. 초임 상한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
- 2.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
- 3. 관련학과는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아동(복지)학 등